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의 중요성¹⁾

박 원 석²⁾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며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바이오 전쟁이 시작되었다. 동물, 식물, 미생물 등 생물자원은 그 동안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간주되어 누구나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93년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자원 보유국에게 배타적 이용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010년 10월 일본 나고야에서는 이러한 주권적 권리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생물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라는 국제조약이 타결되었다. 이제 생물자원 이용자는 보유국으로부터 사전에 이용 승인을 받고, 수익이 발생하는 하는 경우 이를 나누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즉,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의약품, 화장품, 건강식품, 그리고 바이오산업 기업들이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그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 형식으로 생물자원 보유국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지로 몰고 간 조류독감의 유일한 치료제인 타미플루는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해열제로 사용한 팔각나무나 그 열매를 이용하여 생산

된 것이다. 타미플루의 제조사인 미국의 제약회사 로슈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중국에 단 한 푼의 수익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채택으로 이러한 ‘횡재’는 사라지게 되었다. 아프리카의 부시맨들은 몇 주 동안 사냥을 다닐 때 밀려드는 허기를 달래기 위해 지역에서 자생하는 ‘후디아’라는 식물을 먹었다. 이러한 전통지식을 그냥 지나칠 바이오 선진기업들이 아니다. 후디아를 이용해 다이어트 약품이나 식품을 생산한 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을 독식하다 부시맨들과 NGO들의 강력한 항의 끝에 수익의 일부를 최근부터 부시맨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생물자원과 전통지식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기력쇄진, 두통, 복통 등이 있는 경우 인삼이나 천마, 창출 등 주변의 동·식물 등을 치료제로 활용하여 왔다. 많은 바이오 기업들과 한방업체들은 이러한 전통 지식에 아이디어를 얻어 해당 동·식물을 연구하여 새로운 신약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의 제약회사들도 그 동안 우리나라의 한방 관련 약초나 동물들을 수집하여 그 효능을 연구하고 있거나, 스위스 제약업체는 이미 인삼 등을 이용한 각성제

1)Nagoya Protocol and the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2)PARK, Won Seog, Professor of Law School of Law Chung-Ang University, E-mail: wspark66@cau.ac.kr

등을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을 맛있게 독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가 그동안 이익 공유를 강제하기 위한 법률이나 요건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률이나 요건을 위한 국제기준이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어 그 변명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1992년 브라질 리우정상회의에서 채택되어 1993년 발효한 생물다양성협약(이하, 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공평하게 나눌 것을 강제하였다. 협약은 국가의 관할권 내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고 생물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서로 나누어 가지도록 규정하였으나 세부적인 이행방안에 대해서는 국가들 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의정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협약이 발효한 지 17년이 지난 2010년에야 드디어 마련한 것이다. 즉, 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을 사용할 때 그 보유국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자는 협상이다. 예를 들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아토피에 유용한 식물을 제약회사가 그 성분을 분석하여 약품을 만들었다면 그 약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게 일종의 로열티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약이다.

따라서 의정서는 제약업계, 화장품업계, 건강식품업계 등 생물유전자원을 분석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는 외국의 유용한 유전자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사전에 통보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익에 대하여는 분할방법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의 이행사항을 보고하고

입증할 방법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이나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국가도 외국의 생물유전자원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원산지국의 사전통보승인(prior informed consent, 이하 PIC)을 받았는지, 이익의 공유방법이나 절차 등을 위한 상호합의조건(mutually agreed terms, 이하 MAT)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였는가를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생물유전자원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되어 상품화되는 경우 그 이용사항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법률적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뿐만 아니라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이용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전통지식이 아니라 생물유전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지역토착민사회(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LC)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에 한정된다. 이러한 전통지식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한방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방비법이나 기술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특히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한약기술은 중국을 모태로 하여 발달된 것이 많다. 허준의 동의보감은 당시 중국의 비싼 한약재가 아닌 우리나라에 흔히 발견되는 자생식물을 이용하여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제방법을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제방법조차 그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나고야의정서이다.

의정서의 구성

의정서는 27개의 전문조항, 36개의 조문, 그리고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의정서의 채택 취지, 내용, 위임사항, 다른 조약간의 관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조항은 목적(제1조), 용어의 정의(제2조), 적

용범위(제3조), 이익공유(제5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제6조),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제12조), 의무준수체제(제15-18조)와 제19조 이하의 총회 개최 등 행정 관련 조항, 그리고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종류를 담은 부속서 I과 정부간회의 개최 등 향후 작업일정을 담은 부속서 II로 구성되어 있다.

의정서의 핵심쟁점

의정서의 핵심쟁점은 의정서의 적용대상으로서 “유전자원의 이용”의 범위, 특히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지지 않는 파생물의 적용대상 여부, 의정서 발효 전 취득된 유전자원의 적용여부에 대한 시간적 적용 범위, 의정서 발효 전 취득된 유전자원을 계속하여(continuing use) 또는 새로운 용도(new use)로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여부, 유전자원 접근절차의 법적 확실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 위기상황 발생시 병원균 접근의 완화된 기준 및 간소화된 절차 방법,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의 범위와 한방기술 또는 수입 한약재의 적용가능성 및 범위, 국가책임기관의 역할 및 범위, 유전자원 이용 정보공유센터(CHM)의 설치 및 기능, 외국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국가책임의 범위, 유전자원 이용을 감시하기 위한 점검기관(checkpoints)의 기능 및 역할, 유전자원 출처 공개의 강제성 정도 및 방법, 상호합의조건(MAT)에 포함될 내용의 범위 및 이행방안 등이다.

의정서의 적용대상

의정서의 적용대상은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이다. 의정서상 “유전자원의 이용(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이란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포함

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그리고/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genetic and/or biochemical composition)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원에 포함되어 있는 유전적 구성요소나 생화학적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여러 다른 용도로 응용하거나 상업화한 경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부터 도라지를 수입하여 도라지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경우에는 나고야의정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단지 도라지가 상품(commodity)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라지가 기관지 또는 천식에 유용한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그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을 분석하여 새로운 상품을 만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된다.

문제는 파생물의 적용대상 여부이다. 선진국과 개도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의미하는 유전자원을 유전자원에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유전자원의 생화학적 합성물, 즉 파생물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상의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 선진국은 협약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따라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의 이용에 대해서만 이익공유의 대상임을 강조하는데 반하여, 개도국은 생물자원의 합성물에 대한 연구 개발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선진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만이 공유의 대상이라면서 생물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한 이익은 협약의 위임사항을 벗어난다고 하며 반대하였다.

오랜 논쟁 끝에 파생물도 의정서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열어 두기 위해 파생물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였다. 의정서 제2조(용어의 사용)는 “파생물(derivatives)”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적 발현(genetic expression) 또는 대사작용(metabolism)

으로부터 자연적으로 발생한 생화학적 합성물을 의미하고, 이러한 합성물은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가진 뱀 그 자체뿐만 아니라 DNA가 없는 뱀독도 의정서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파생물은 의정서 제2조(용어의 사용)에 정의만 내려져 있을 뿐 의정서 본문 어디에도 파생물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파생물이 의정서의 적용대상에 제외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전자원의 이용”에 대한 정의에 생화학적 구성성분이 있으므로 의정서 본문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이라는 문구가 사용되는 곳에는 파생물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의정서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

나고야의정서 협상에서 가장 난항을 겪은 쟁점이다. 나고야의정서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발효 이전에 취득된 유전자원도 포함할 것인가, 또는 의정서 발효 전에 취득된 유전자원이지만 이를 계속해서 이용하거나(continuing use) 또는 새로운 용도(new use)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할 수 없었다. 선진국의 이용국 협상대표들은 의정서 발효 후 취득된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만 적용될 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의 제공국 협상대표들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전에

선진국들이 사전통보동의나 상호합의조건에 대한 계약 없이 몰래 가져와 종자은행 등에 보관되어 있는 유전자원도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한다.³⁾

나고야의정서 협상대표들은 도저히 합의될 수 없는 쟁점에 대해 결국 교묘한 문안을 만들어 낸다. 의정서 제3조는 “협약 제15조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유전자원, 그러한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그리고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는 의정서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에 대한 법률가들의 해석 또는 당사국들의 재량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두고두고 분란의 씨앗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를 위시한 유전자원 부유국은 끈질기게 유전자원의 계속적 이용이나 새로운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의정서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선진국은 처음부터 적용대상이나 심지어 협상의 의제조차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따라서 무엇이 계속적인 이용인지 또는 새로운 이용인지에 대하여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 문제도 또한 변호사들을 위한 끊이지 않는 자금줄이 될 것이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의 이용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도 의정서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협약 제8(j)조의 규정에 따른 것인데, 당사국들은 국내법에 따라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관한 ILC의 관습법,

3)다음 사항들이 의정서의 적용범위 포함여부에 대해 도저히 합의될 가능성이 없어 의정서에서 삭제되었다: (가) 인간의 유전자원; (나) 유전자원이 국제보건규정에 기재된 바에 따라 인간의 건강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험에 해당 되고, 그리고 제6조b항(특별고려 또는 위기상황)에 규정된 특별 문서에 의해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포함된 경우; (다)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d) 위도 60도 이하지역의 남극지역에 존재하는 유전자원; 그리고 (e) 유전자원으로 이용되지 않는 상품으로서의 유전자원.

공동체 규약, 그리고 절차 중 관련되는 것을 고려하고, PIC나 MAT을 체결하여야 한다. ILC에 관습법과 공동체 규약 그리고 절차 모두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되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 그러나 그 방법 및 절차는 당사국의 법률이 결정할 수 있다.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 의정서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전통지식은 유전자원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둘째, 의정서가 발효한 시점에 토착지역공동체(indigenous and Local Communities, 이하 ILC)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동 ILC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publicly available) 전통지식이나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지식은 의정서에서는 삭제되었다. ILC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으나 유엔환경계획은 용어사전에서 인종적, 문화적, 종교적, 언어적으로 주류 사회와 단절된 단체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위 ILC에 부합하는 단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는 55개의 ILC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이 한방 지식에 대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한방전통지식이 현재 존재하는 55개 ILC 중의 전통지식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의정서 발효 후에 취득된 관련 전통지식이라는 것도 입증하여야 한다. 한방전통지식이 기초한 “황제내경”이 ILC의 전통지식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익공유의 적용범위 및 공유대상 국가

의정서 제5조는 “유전자원의 이용과 후속적인 응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유전자원의 제공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

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법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그러한 이익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공유는 위에서 언급한 유전자원의 이용뿐만 아니라 후속적인 응용 및 상업화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모두 그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유전자원의 공유대상국이 누구인가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협상이 결렬될보직전에 이를 정도로 대립하였다. 선진국은 협약 제15조7항에 따라 공유대상국이 자원제공국(Contracting Party providing such resources)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개도국은 협약 제3항에 따라 유전자원 원산지국(Countries of origin of such resources)이라고 해석하였다. 결국 몇 번의 정회 끝에 2010년 9월 몬트리얼 협상에서 개도국이 합의안으로 제시한 “유전자원의 원산지국인 유전자원의 제공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사국”으로 합의하였다. 이 조항이 원산지국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생물유전자원을 협약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득한 국가까지 포함하는지 명확하게 합의되었다고 할 수 없다. 최소한 원산지국은 포함되고, 협약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구체적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제공국도 이익공유 대상국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의정서는 제6조에서 유전자원의 이용을 위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국인 유전자원 제공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취득한 당사국의 사전통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당사국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규제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사국의 관련 법률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문제는 만약 당사국이 PIC에 대한 법률을 전혀 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PIC의 적용을 받지 않는가이다. 그 이유는 의정서 제5.3조가 PIC을 요구하는 당사국은 PIC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PIC을 요구하는 국가는 PIC이 필요한 유전자원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유럽연합은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개도국은 PIC이 필요하지 않다고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PIC은 자동적으로 요구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문구는 협상의 마지막까지 미합의조항(브렛킷)으로 되었다가 채택문이 유럽연합의 문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국내법안을 만들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해결책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존재하는 모든 유전자원 및 전통지식은 PIC의 대상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의정서는 PIC를 요구하는 당사국에게 법적 확실성, 명확성 그리고 투명성이 확보된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이나 규제요건을 제공하고;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공정하고 비자의적 규칙 및 절차의 제공;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명확하고 투명한 서면결정의 제공; PIC가 부여되었다는 결정의 증거로서, 그리고 MAT가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허가증이나 그 상응 문서를 접근시에 발급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적용되는 경우, 그리고 국내입법에 따라,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ILC의 PIC 또는 승인 및 관여를 획득하기 위한 기준 그리고/또는 절차의 규정; 그리고 MAT의 요구와 체결을 위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의 설립하여야 한다.

국가연락기관과 국내책임기관의 지정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가

연락기관을 지정하고,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연락기관은 다음의 정보들을 공개하여야 한다: 파생물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PIC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와 MAT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익공유 포함)에 관한 정보;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접근을 신청하는 자의 경우에는, PIC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또는 ILC의 승인과 관여(적절한 경우) 그리고 MAT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이익공유 포함); 그리고 국내책임기관, 관련 ILC,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또한 당사국은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하나 이상의 국가책임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의 허용 또는 접근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문서의 발급, 그리고 PIC의 취득과 MAT을 체결하기 위한 해당 절차와 요건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단일 기관도 가능하다.

제1항의 내용을 제외하고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제19조를 사실상 복사하였다.

접근 및 이익공유정보센터의 설치 및 역할

당사국은 정보교환기구체제의 일환으로 접근및이익공유정보센터(Access and Benefit-Sharing Clearing House, 이하 센터)를 설립하여야 한다. 센터는 접근 및 이익공유와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특히 당사국이 공개하는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당사국은 비밀정보의 보호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국 총회의 결정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의정서에 의해 요구되는 모든 정보를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센터에 제공되는 정보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입법, 행정 그리고 정책 조치;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기관(들)에 관한 정보; 그리고 PIC 발급 결정 또는 MAT가 체결되었다는 증거로서 접근시 발급되는 허가증 또는 상응 문서.

의무준수의 대상

의정서 제15조는 의정서와 관련하여 당사국이 부담하는 의무준수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의정서는 개별 당사국에게 자국의 관할권에서 이용되는 유전자원이 다른 당사국의 국내 접근 및 이익공유 법률 또는 규제요건에 의해 요구되는 사전통보승인에 따라 접근되고 그리고 MAT를 체결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률이나 행정 또는 정책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위의 조치가 위반되는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하고, 위반주장에 대하여는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해 유전자원 원산지국의 ABS 관련 법률을 모두 준수하였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 법률에 따라 PIC을 취득하고 MAT의 체결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규제요건만 마련하면 된다. 그리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시정을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치는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점검기관의 설치와 기능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이용을 감시하기 위

한 방법으로 당사국에게 하나 이상의 점검기관을 지정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점검기관의 역할은 PIC의 취득, 유전자원 출처, MAT의 체결, 그리고/또는 유전자원 이용과 관계가 있는 관련 정보를 수집 또는 수령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검기관은 효과적이어야 하고(must), 동 업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하며(should), 유전자원의 이용 중 특히 연구, 개발, 혁신, 상업화 전뿐만 아니라 상업화의 모든 단계에서의 관련 정보의 수집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should).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점검기관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하고, 위반시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상응하는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점검기관은 또한 국제의무준수승인증서에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위 정보를 관련 국내책임기관, PIC 발급국 그리고 ABS 정보센터 중에서 적절한 곳에 제공한다(will). 그러나 위 정보 중 비밀정보는 제공될 필요가 없다.

이 외에 당사국은 유전자원의 사용자와 제공자에게 MAT에 상호합의조건의 이행에 대한 정보공유(보고요건 포함) 조항을 포함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즉 MAT에 반드시 이행사항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상호합의조건의 의무준수

당사국은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MAT의 내용에 분쟁해결의 관할법원, 준거법, 그리고/또는 주선 또는 중재와 같은 대체분쟁해결을 위한 선택사항을 포함하도록 장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MAT로부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제청구기회가 가능하도록 자국의 법률체제에서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사법에 대한 접근과 외국판결과 중재판정의 상호승인과 집행에 관

한 메커니즘의 이용에 효과적인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글을 마치며

전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은 약 700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2% 정도만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바이오산업의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도둑맞은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외국의 유용한 생물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 방안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우리나라는 의정서 비준은 고사하고 국내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서로서로 ‘밥그릇 쪼개기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는 생물자원에 대한 고유한 업무 영역을 가지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예를 들어, 호박이 산에 있으면 산림청, 밭에 있으면 농림부, 논두렁에 있으면 야생이라 하여 환경부, 강이나 바다에 있으면 해양수산부, 호박에 미생물이 있으면 보건복지부, 지적재산권이 있으면 특허청 소관이라고 주장한다. 각 부처의 권리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게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이용 상황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조차 부인하려는 부처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행정부 수반과 국회가 현명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때가 도래하였다. 우리나라의 생물주권 확보를 위한 입법과 의정서 비준이 시급하다. 바이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 마련의 첫 걸음이다.